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7
----------	------

제출연월일 : 2016.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접종 내역 추가(제2조제1항)
-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 접종 대상자 규정 폐지(제2조제2항)
- 다. 예방접종업무 전자계약 체결 근거 마련(제4조제1항)
- 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기간 조정(제4조제3항)
- 마.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요건 신설 및 해지강행규정 추가(제5조)
- 바. 예방접종업무 위탁비용 청구기간 연장(제7조)
- 사.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서식 변경(별지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나.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12. 10 ~ 12. 30) : 별도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제11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1호부터 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폐렴구균
12.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DTaP-IPV)
13. 파상풍, 디프테리아(Td)
14.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
15. 일본뇌염(생백신)
16.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탁계약서”를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지정서”를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며”를 “3년 이내로 하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해지할 수 있다”를 “해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 제1항 중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를 “예방접종 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 시스템	[ ]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 <li>▪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i> </ul>			
제6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li> </ul>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청구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m<sup>2</sup>]

(뒤쪽)

###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청구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및 백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 〈신 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u>11.</u>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p> <p>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3세 미만 아동으로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으로 한다.</p> <p>제4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위탁계약기간은 <u>2년으로</u> 하며 갱신할 수 있다.</p>	<p>제2조 ① (현행과 같음)</p> <p>11. 폐렴구균 12.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13. 파상풍/디프테리아(Td) 14.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15. 일본뇌염(생백신) 16. 인유두종 바이러스(HPV)</p> <p><u>17.</u>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4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탁계약기간은 <u>3년 이내로</u> 하며 갱신할 수 있다.</p>

<p>제5조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u>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 ① 위탁의료기관은 <u>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u> 구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p>	<p>제5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u>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u></p> <p>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p> <p>제7조 ① 위탁의료기관은 <u>예방접종 후</u> 구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p>
--	---

현행															
별지 제 1호 서식 변경															
[별지 제1호 서식]															
<b>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b>															
(앞쪽)															
제1조 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table border="1"> <tr> <td>의료기관명</td> <td>요양기관번호</td> </tr> <tr> <td>요양기관종별</td> <td>진료과목</td> </tr> <tr> <td>주소(소재지)</td> <td></td> </tr> <tr> <td>전화</td> <td>전자우편주소</td> </tr> <tr> <td>대표자</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r> <td>면허종별</td> <td>면허번호</td> </tr> <tr> <td>의료정보시스템</td> <td>[ ] 사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 미사용</td> </tr> </table>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 미사용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 <li>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i> </ul>														
제5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li> </ul> <p>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lt;갑&gt; 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lt;을&gt; 의료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p>														
첨부서류	<table border="1"> <tr> <td>접종비용 청구용 통장사본 1부</td> <td>수수료 없음</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보존용지 70g/㎡]</p>	접종비용 청구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접종비용 청구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개정안															
<p>■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b></p> <p style="text-align: right;">(앞쪽)</p>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table border="1"> <tr> <td>의료기관명</td> <td>요양기관번호</td> </tr> <tr> <td>요양기관종별</td> <td>표시과목</td> </tr> <tr> <td>주소(소재지)</td> <td></td> </tr> <tr> <td>전화</td> <td>전자우편주소</td> </tr> <tr> <td>대표자</td> <td>생년월일</td> </tr> <tr> <td>면허종별</td> <td>면허번호</td> </tr> <tr> <td>의료정보시스템</td> <td>[ ] 사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 미사용</td> </tr> </table>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 미사용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계약범위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 <li>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i> </ul>														
제6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li> </ul> <p>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lt;갑&gt; 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lt;을&gt; 의료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p>														
첨부서류	<table border="1"> <tr> <td>접종비용 산출용 통장사본 1부</td> <td>수수료 없음</td> </tr> </table>	접종비용 산출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접종비용 산출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